

2023년도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자체평가 시행 안내

□ 추진근거

- 「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(중앙사회서비스원의 업무)
- 「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(사회서비스 품질관리)

□ 자체평가 개요

- (평가대상) '23년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 총 4,936개소
 - * (자체평가) '23년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대상기관 전수(4,936개소)
 - * (자체평가+현장평가) 총 2,220개소('23.3.9. 기준)
 - * 지표적용기간의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매출액 상위 45%를 기준으로 사업군별 (아동역량개발, 사회참여지원, 신체건강지원) 및 지역별(17개 시·도) 비율 배분
- (입력기간) 2023. 5. 12.(금) ~ 5. 31.(수)
- (평가절차)

일 정	주 요 내 용
5월	• 품질평가 시행계획 및 대상 기관 확정 안내
5월 2주 ~ 5월 5주	• 자체평가(자체평가표 바우처시스템 입력·제출) 실시
6월 ~ 9월	• 현장평가 실시 * 현장평가 일정은 6월 이후 해당 지역 담당 평가위원이 직접 기관에 연락하여 일정 조정 예정(바우처시스템에 기관정보 현행화 필수)
10월 ~ 11월	• 확인 평가 및 1차 정량 지표 결과 통보 • 이의신청 접수 • 이용자·제공인력 만족도 조사, 행정처분 내역 반영
12월	• 최종 평가 결과 확정 및 통보 및 인센티브 지급, 평가 결과 공개

□ 자체평가 세부내용

- (제출방법) 평가지표별 기준에 따라 제공기관에서 자체평가 후 전자바우처시스템에 결과 입력 및 제출
- (입력경로) 전자바우처시스템 접속(기관대표(관리자) 아이디 로그인)
 - ➔ 품질평가 메뉴 ➔ 기관정보(사업별 기관정보 현행화) 최신화
 - ➔ 자체평가 클릭 ➔ 사업별 자체평가 점수 입력 ➔ 저장 및 제출
- * 기관정보 현행화 완료 후에 자체평가 결과 입력 가능함
- ** 자체적으로 기관정보 현행화하지 않은 기관 대상 추후 평가 관련 정보 누락 등의 불이익은 기관에서 감수해야 함
- ※ [중앙사회서비스원 홈페이지 공지사항\(알림마당\) 내 자체평가 시스템 매뉴얼 영상 참조](#)
- (지표영역) 기관운영, 제공인력관리, 서비스 제공·평가, 서비스 성과 4개 영역 25개 지표(A1.1. 운영규정 및 지침 ~ D1.1.이용자 유지율)

□ 기타사항

- 자체평가 입력 전 반드시 기관정보 현행화 필수
 - 담당 현장평가 위원 일정 조율 및 방문, 그 외 평가 관련 안내 사항 전달 시 활용 예정
- 평가 관련 자료 확인
 - 평가지표 편람: 전자바우처시스템 및 중앙사회서비스원 공지사항
 - 평가지표 개요 및 교육: 중앙사회서비스원 교육홈페이지
- 현장평가 일정 확정
 - 현장평가 위원이 담당 지역의 평가 대상 기관으로 직접 연락하여 일정 협의 및 조정 예정('23. 6월 이후)
- 중앙사회서비스원 및 전자바우처시스템 공지사항 확인 요망
 - 2023년도 품질평가(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) 대상 기관 안내 목록
 - 2023년도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자체평가 시스템 매뉴얼(동영상)
 - 평가지표 중 B1.3.제공인력 교육(엑셀), C3.3.서비스 모니터링(엑셀) 작성 양식